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영 등 포 구 의 회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능률적이고 합목적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98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7. 11. 26. (수) ~ 12. 2 (화) (7일간)

3. 감사실시대상및 사무

가. 대상기간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

○ 구의회사무국

나. 사무의 범위 : 구의회사무국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운영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전문위원	직원
배기한	박정자	김동철, 노동우, 박정호, 손영상 유남열, 이일희, 정종태	이준석	사무국직원2 속기사1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장 소	감 사 대 상	비 고
97.11.26(수) ~12.2 (화)	영 등 포 구 의 회 소 회 의 실	영 등 포 구 의 회 사 무 국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 이 있을 수 있음

6. 감사요령

대 상	감 사 방 법	주요감사 착안사항	비 고
구 의 회 사 무 국	○ 현황보고청취 ○ 질의 및 답변 ○ 서류 및 현지확인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기본운영계획의수립 및 중 합판정 ● 회의의방청 및 참관 ●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의회소관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예산편성 및 집행총괄 ● 청원의접수, 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관계공 무원 - 소관국장 및 관계공 무원

7. 감사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감사반장)
- 위원장 인사
 - 적극적인 감사당부 및 성실한 수감자세 강조
 -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 선서
- 국장인사 - 간부소개
- 현황보고 - 감사대상 사무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 질의, 답변 - 개별 및 일문일답식 감사
- 서류 및 현장확인 - 관계인 출석, 증언, 의견청취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8.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가.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 1997년도 업무계획서
- 1997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 1997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
- 1997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1997년도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 접수처리부

나. 제출부수 : 15부

다. 감사요구자료

-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7.1월 이후의 것을 작성
- 위원회별로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 보고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 운영하는 부서로서 경직된 자세보다 적극적인보좌로 최대한 뒷 받침을 하겠다는 근무 자세를 갖추어야함.

나. 차량운행일지 기록 관리 철저

다. 의원수첩 제작시 의원순서 및 전화번호등 내용을 정확히 기재할 것.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재무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무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98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7. 11. 26. (수) ~ 12. 2 (화) (7일간)

3. 감사실시대상및 사무

가. 대상기간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

- 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 총무국(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 재무국(재무과, 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
- 각동 사무국 (22개동)

나. 사무의범위 : 지방자치법제9조에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전문위원	직원
김충용	손영상	김동기, 배기한, 서홍선, 이명훈 임창수, 정종태, 최수영, 황호천	이준석	사무국직원2 속기사1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장 소	감 사 대 상	감 사 방 법	비 고
11.26 (수)	구청 기획상황실	기 획 실	업 무 보 고 개 별 감 사	필요시 현장확인
11.27 (목)	"	총 무 과 시 민 과	업 무 보 고 개 별 감 사	
11.28 (금)	"	사 회 진 흥 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 권 과	재 무 국 업 무 보 고 개 별 감 사	
11.29 (토)	"	재 무 과 세 무 관 리 과	기 획 실 총 무 국 재 무 국 개 별 감 사	
11.30 (일) 공 휴 일			
12. 1 (월)	"	부 과 1 과 부 과 2 과 지 적 과	기 획 실 총 무 국 공 개 질 의 답 변 감 사	필요시 현장확인
12. 2 (화)	"	강 평	재 무 국 공 개 질 의 답 변 감 사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주요감사사항

대 상	감 사 방 법	주요감사 착안사항	비 고
기 획 실 총 무 국 재 무 국	○ 현황보고청취 ○ 질의및답변 ○ 서류 및 현지확인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무자동화추진현황 • 광고물관리분야서울시감사사항 • 중기재정계획수립 • 공무원 정원증감현황 • 관내 수영장 수질검사현황 • 소송관련 배상금 예산집행현황 • 불용예산, 이용, 전용예산현황 • '97년도 해외연수현황 • 통반장 서울신문구독현황 • 경상비 규모 및 내역 • 세무종합전산화개요 • 해외시장 판로개척 계획 및 실적 • 체납세 징수현황 • 통장단 자녀장학금지급 내역 •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 65세이상 노인복지종합 카드추진 현황 • 구립 보육시설 현황과 향후계획 • 시설관리공단 추진현황 • 체육시설물 관리현황 •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 구 매 및 발주현황 • 세목별 이중부과된 건수 및 금액 현황 • 국공유지 점용현황 • 시세, 구세 월별 연계현황 • 종토세증과세부과현황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가.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 1997년도 업무계획서
- 1997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 1997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
- 1997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1997년도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 접수처리부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제출부수 : 15부

다. 감사요구자료

-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7.1월 이후의 것을 작성
- 각 위원회별로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 보고

라. 제출처 :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8. 시정 및 조치사항 : 별 첨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문 화 공 보 담 당 관</p>	<p>▷ 제목 : 서울신문 구독 실태</p> <p>서울신문 구독의 법적근거가 72년 4월 청와대 및 국무총리 지시 등에 의해 현재까지 장기구독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예산지침이나 지시등 상부의 명에 의해 특정신문을 장기구독 해왔으나 앞으로는 상부지시 등에 의한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신문간의 구독신청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p>	건의사항
<p>기 획 예 산 담 당 관</p>	<p>▷ 제목 : 구정연구계의 업무추진 강화</p> <p>현재 구정연구계에서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각종 제안, 행정쇄신을 위한 각종 과제를 연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비, 예산 부족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다가오는 21C 행정발전을 위해 각종 인세티브를 지원하고 특히 타부서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다양한 과제를 연구하여 구정발전을 직보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출 수 있도록 구청장의 직속기구로 격상할 것을 건의함</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기 획 예 산 담 당 관</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현재 각 국,실,과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구정연구계등)의 전문성 부족 및 운영 미흡으로 봉사단운영이 유명무실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팀을 한부서의 소속으로하여 주민홍보 및 자원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해 줄 것을 건의함.</p>	
<p>감 사 담 당 관</p>	<p>▷ 제목 : 감사업무 추진철저 구청 발주공사의 입찰계약등과 관련된 금품수수 사건(구청장, 계약계장)과 동사무소에 신고사항인 증, 개축건에 대해 적시에 감사가 이루어 지지않아 원인 파악 및 대책수립 미흡</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향후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 감사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시 감사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시 민 과</p>	<p>▷ 제목 : 민원실 운영 개선 현재 시민과내에 (주)크라운여행사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상주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시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시 민 과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여행사 자체 유니폼 및 명찰을 착용하고 안내소에 회사 상호 현판을 부착하여 보다 친절하고 밝게 운영되도록 조치할 것</p>	
총 무 과	<p>▷ 제목 : 각실과 전화 사용 실태</p> <p>현재 각 실과 전화사용 실태를 보면 공무 및 민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 외에 사적인 용도로 전화를 이용하여 월 국제 및 시외 통화료를 1,000만원(동사무소 제외)이상 과다 지출되고 있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의 전화 사용은 가능한 자제하도록 통제하여 구민의 민원통화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통화료 절약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p>	
사 회 진 흥 과	<p>▷ 제목 : 생활안정대책 자금 지원현황</p> <p>생활안정대책 자금 지원자 37명중 은행측의 까다로운 담보요구로 실제 10명밖에 지원이 안되는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취지와는 맞지 않고 있으며, 자금의 실제 대출을 맡고 있는 은행의 너무 보수적인 여신관리로 대출에 어려움이 있음</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사 회 진 흥 과</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이 까다로워 담보평가가 실거래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부족등 자격미달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공인기관에 의뢰 실제 자산 평가를 통해 선순위 상환대출이나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등 나머지 27명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자금지원이 골고루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먼저 은행측의 담보 서류심사후 대출자격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류를 접수하여,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를 줄이고 신청 탈락자로부터 항의등 행정 불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p>	
<p>지 역 경 제 과</p>	<p>▷ 제목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 상환연기</p> <p>현재 우리구에서 93년부터 97년까지 약52억원의 기금으로 '97현재 총 112억 7천여만원을 133개 업체에 대출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부도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보호 육성차원에서 대출금 상환 기일을 1년씩 연장해 주어 부도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p>	<p>건의사항</p>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재무과	<p>▷ 제목 : 변상금부과시 과세자료 확인철저</p> <p>1. 신길동 2892번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 실제 4,661,587원이 부과되어야하나 이보다 2배 이상인 12,000,000원이 착오부과 하였음</p> <p>2. 신길동 2924번지에 대한 과세자료 착오로 5,221,310원을 5,898,380원으로 착오부과 하였음 이로 인해 각종 세금 부과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각종 세목의 착오 부과된 세금은 과세자료의 철저한 확인을 통해 즉시 감액 정정 조치하고 주민들로부터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과세 업무를 철저히 기하기 바람</p>	
지역경제과	<p>▷ 제목 : 민원상담관 운영실태</p> <p>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상담관의 운영실태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민원상담관 24명, 예산 136,000,000원)</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현재 우리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 긴축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민원상담관, 구청 및 각동, 보건소 사환(예산 183,244,000원)등 불요불급한 인원을 축소, 인력을 적정배치 근무 토폴하여 인건비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총 무 과	<p>▷ 제목 : 근무환경 개선</p> <p>각 실과의 근무 환경이 날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각종 사무자동화 기기 등을 비치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는 있으나 민원인과의 상담시 각 과장 자리 소파의 상석을 구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응대할 수 있는 평석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할 것을 건의함</p> <p>(모범과장석 : 민방위재난관리과 참조)</p>	건의사항
보 건 소 의 약 과	<p>▷ 제목 : 병원 입원환자 관리 지도감독 철저</p> <p>종합병원 입원환자등이 환자복 차림으로 무단 외출하여 인근 음식점 및 가게 등을 출입하여 노약자 및 유아들에게 요로감염, 폐렴, 창상감염, 균열증등 각종 세균 감염될 수 있음을 많은 주민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병원 입원 환자들의 사사로운 출입에 대해 철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할 것</p>	
건 설 관 리 과	<p>▷ 제목 : 도로점용료 부과 철저</p> <p>각종 공사장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기간경과, 허가 면적 초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 미흡 및 묵인등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설관리과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관계공무원은 각종공사장에 일시 도로 점용료부과에 각 실과에 긴밀히 협조하여 보행자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당한 점용료부과 등을 통해 세외 수입 확충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p>	
토 목 과	<p>▷ 제목 : 각종공사 지도감독 철저</p> <p>신길동 영재산업(주) 정문앞 도로 개설 구간 공사에 하수구 연결 설치 불량 및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부설공사가 재연되어 주민의 혈세 낭비와 장마철 우수 역류현상 및 침수피해가 우려되며 재시공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관계공무원은 하수구 연결 설치공사 당시의 촬영 사진과 설계도면을 가지고 철저히 현장을 확인한 후 부실공사 부분을 재시공 하도록 조치할 것</p>	
총 무 과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p>▷ 제목 : 불법광고물 단속철저</p> <p>수많은 불법광고물이 벽에 부착 또는 무단 투기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는 단 1건밖에 행정조치한 적이 없는데 이러한 불법 첩지류를 제거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낭비와 심각한 환경공해가 되고 있는 실정임</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관계공무원의 방법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원인자를 찾아 수익자 부담으로 엄중조치하는등 밝은 거리환경조성 및 세외 수입 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총 무 과 지 적 과 부 과 2 과</p>	<p>▷ 제목 : 구세 확충 방안 강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2개 각동단위 경제살리기 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건의함 2. 각종 행사때 불필요한 사진촬영을 자재하여 예산 절약을 도모할 것 3. 불경기로 인하여 지가가 계속하락하는 추세이므로 영등포 재래시장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향 재조정 해줄 것을 건의함. 4. 경마장 영등포 증계소의 마권세가 연간 100억 이상 서울시에 납부되고 있는데 교부금으로 겨우 3%만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 보다 강력한 요구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p>건의사항</p>
<p>재 무 과</p>	<p>▷ 제목 : 도시계획에 따른 착오 과세</p> <p>도시계획에 의해 편입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부당하게 30여건에 대해 부과 징수 되었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도시계획 확정과 함께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 공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양 평 1 동	<p>▷ 제목 : 동세출예산 도급경비정리부 미정리</p> <p>동 회계담당자는 세출예산 도급경비 정리부를 총괄 및 각 예산과목별 지출 현황을 정리하여야 하나 일부 미정리한 사례가 있음</p> <p>(97. 8. 20~97. 11. 28)</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분기별 총괄 정리는 되었다고하나 매 지출발생시 바로 출납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각 과목별 지출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하여 알뜰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p>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시민보사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민보사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각종자료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98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7. 11. 26. (수) ~ 12. 2 (화) (7일간)

3. 감사실시대상및 사무

가. 대상기간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시민생활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
- 각동사무소

나. 사무의범위 : 지방자치법제9조에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자치구사무

4. 감사반의 구성

- 감사총괄 :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전문위원	직 원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박정자, 이용주 이중식, 이정운, 전병운, 최락희	유재한	사무국직원2 속기사1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장 소	감 사 대 상	비 고
11.26 (수)	제 2 감 사 장	보 건 행 정 과 보 건 지 도 과 의 약 과	필요시 각동사무소 및 현장확인
11.27 (목)	"	사 회 복 지 과 가 정 복 지 과 위 생 과	
11.28 (금)	"	지 역 경 제 과 환 경 관 리 과 생 활 환 경 과	
11.29 (토)	"	보 건 행 정 과 보 건 지 도 과 의 약 과 사 회 복 지 과 가 정 복 지 과	
11.30 (일) 공 휴 일		
12. 1 (월)	"	위 생 과 지 역 경 제 과 환 경 관 리 과 생 활 환 경 과	
12. 2 (화)	"	강 평	필요시 각동사무소 및 현장확인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감사요령

대 상	감 사 방 법	주요감사 착안사항	비 고
보 건 소 시 민 생 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청취 ○ 질의및답변 ○ 서류 및 현지확인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기획, 평가 및 통계의 현황 • 문서, 예산, 인사현황 • 진료비징수 및 진단서 발급현황 • 방대책수립 및 시행현황 •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 성인병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계획수립 현황 •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약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시행에 관한 사항 • 구호및복지에관한사항 • 새마을노임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 부량인단속(남녀포함) • 수용보호(남자수용시설) • 구호및복지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관계 공무원 - 소관국장 및 관계 공무원

대 상	감 사 방 법	주요감사 착안사항	비 고
보 건 소 시 민 생 활 국	○ 현황보고청취 ○ 질의및답변 ○ 서류 및 현지확인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 구직수요조사 및 취업알선 현황 ● 직업안내소허가 및 지도단속현황 ● 가정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가정의례(묘지, 매·화장, 장의, 예식등)에 관한 사항 ● 여성복지종합계획수립 및 조정현황 ● 청소년종합시책수립 및 조정현황 ● 식품위생업소허가 및 지도단속 ● 위생업소 위반사항감시단속업무 추진계획 수립 현황 ● 공장등록과 실태현황 ● 연료수급조절과 연료 판매소허가 ●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가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 환경관리에 관한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한 사항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상정의결

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보 건 소 시 민 생 활 국	<p>▷ 제 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부실 2) 비상급수 수질검사 3) 생보자 용자 지원 건 4) 쓰레기 무단투기 정수실적 저조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체 생산 비문 발생시 파기하지 않음 (전 배부처 거의 동일한 것으로 사료 됨) 2) 비상급수 수질검사 10개중 7개 불합격 판정으로 개선 요망함. 3) 서초와 영등포구만 용자 지원받지 않음 (홍보부족 및 규제완화) 4)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이해 주지 부족으로 과태 료 납부 반발 과다 	
의 약 과	<p>▷ 제목 : 위법약국 행정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은 당연하다고 사료됨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례를 근 절시키도록 할 것 	
보 건 행 정 과	<p>▷ 제목 : 방역약품 예산 상향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계는 지역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고 생명 과 관련이 있으니 적기에 방역할 수 있도록 준비 요망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약품(연막용, 분무용)을 충분히 구입 비치하여 주민의 요구나 필요시에 즉시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위 생 과	<p>▷ 제목 : 위생업소 청문회 활성화</p> <p>- 청문회는 사실여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나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p>	
위 생 과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현재의 청문제도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청문회를 활성화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할 것.</p> <p>▷ 제목 :이용업소 퇴폐행위근절대책</p> <p>이용업소의 퇴폐행위는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지도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함.</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이용업소에서 밀실 칸막이등 기타 퇴폐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오픈하여 투명성이 가시화되어 퇴폐행위를 할 수 없게끔 시설에 지도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함.</p>	
보 건 행 정 과	<p>▷ 제목 :자율방역단 교육관리 소홀</p> <p>- 자율방역단 교육을 실시토록 각 동장에게 지시하였으나, 실시 결과를 파악치 않은 이유</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방역약제중 살충제는 독극약으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관리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결과는 철저히 파악할 것.</p>	
보 건 행 정 과	<p>▷ 제목 :의료보험카드 관련 진정서</p> <p>- 타인의 의료보험카드로 병원에 입원한 후, 본인이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조사결과 확인이 되었으면 고발조치의뢰와 의료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환경 관리 과	<p>▷ 제목 : 폐수배출업소 취약시간대 지도·점검계획 변경</p> <p>- '97년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중 취약시간대(야간·공휴일·강우시등) 점검은 연간 1~2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고 주간에만 실시하는 등 계획을 임의로 변경 시행한 이유.</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조사 복명하고 변경된 사유를 보고 하지 않은채 과장전결로 추진 하였음은 상사에게 허위 보고한 사실이 발견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책이 요구됨</p>	
보건 지도 과	<p>▷ 제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추진실적 미흡</p> <p>- 모자보건 사업중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목표(6,441명)대 실적(2,553명)이 39.6%에 불과하고 불용액은 국고반납 예정임.</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p>	
사회 복지 과	<p>▷ 제목 : 영등포노인회 구비보조금 집행 부적절</p> <p>- 정액보조금 6,000천원, 봉사활동비 2,160천원으로 총 8,160천원 중에서 정액 보조금 6,000천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집행 처리하고 있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구비 보조금 전액을 노인회지회 예산에 편성 자체 집행토록 시정조치 할 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가 정 복 지 과	<p>▷ 제목 :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수 109개소, 지도점검 42개소로 실적이 38.5%로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 저조.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민간어린이집 운영지도 방안모색 및 지도점검 강화할 것 	
가 정 복 지 과	<p>▷ 제목 : 요보호 선도대책위원회 운영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개최 목표 4회이나 실적이 없음 이는 사회적·지역적 중대 문제임에도 관심부족으로 운영이 소홀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요보호 선도대책 위원회 내실화 할 것 	
보 건 소 시 민 생 활 국	<p>▷ 제목 : 수의계약시 견적서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보건소 및 시민생활국에서는 1개업체로부터 2개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업무처리 하였음.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시장조사를하여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시행하여야 함. 	
보 건 지 도 과	<p>▷ 제목 : 방문, 순회진료의 계획과 실적의 불일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간호, 진료), 순회진료의 월별계획에 따라 동별 순회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나, 실적은 월별계획과 차이가 있음.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간호, 진료), 순회진료는 월별계획에 따라 반드시 일정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보 건 소 시 민 생 활 국 환 경 관 리 과	<p>▷ 제목 : 각종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지급명세서, 복명서, 기타 장부정리 내역이 형식적이고 착오기재가 많음.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관리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p>▷ 제목 : 영등포구 지방의제21및 장기환경보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립된 영등포구 지방의제21 및 장기 환경보전 계획을 '97년도에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으며 '98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환경 관리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 건 소	<p>▷ 제목 : 의료기관 점검상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병원, 의원)지도 감시계획에 따라 연2회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사항만 점검하는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술적인 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전문직공무원 양성 및 충원하기바람.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의 약 과	<p>▷ 제목 : 의료민원 처리에 있어 보건소 역할의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민원은 보건소 의약과로 접수되나 대부분 의 료과실에 대한 보상요구로 의료법으로는 처리 못 하고 의료전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등)에 심의 의뢰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약 과에서 단독처리가 불가능함.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으로 개최토록 되어 있는 의료분쟁조정위 원회(의료법 제54조의2)를 활성화시켜 의료민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 역경 제 과	<p>▷ 제목 :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6동 남서울아파트 옆 일반주택에 대하여 가 스공급 시설 설치를 하여야 하나, 아파트 담장 붕괴 우려가 있다고하여 가스공급 설치 거부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공사 설치 공사는 현장 확인후 주민의 피해 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함. 	
가 정복 지 과	<p>▷ 제목 : 예식장 점검사항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 점검중 예식장에 타사제품 반입 거절행위 (드레스, 미용, 비디오 촬영)나 음식점 부대시설 사용강요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위반행위에 대 해 경고등 가벼운 조치를 취하고 있음.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 지도점검시 위반사항을 법대로 처리할 것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보 건 행 정 과	<p>▷ 제목 : 에이즈(AIDS)환자 관리 미흡</p> <p>- 에이즈환자를 중점관리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음</p>	
보 건 행 정 과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상급기관에 특별관리법 제정 건의 요망</p> <p>▷ 제목 : 자율방역단 유류집행 대장미비치</p> <p>자율 방역단에 지원하는 유류에 있어서 구자체에서 하는 사용량과 동에서 사용하는 사용량을 비교하여 보면 휘발유(동 : 1당 평균 538원 구에서는 782원) 경유(동 : 1당 평균 296원 구에서는 329원)으로 약제에 희석하는 경우는 살충효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기계가동용 휘발유는 방역 작업량하고 밀접한 관계로 방역효과와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유류수불관리대장이 구 및 동사무소에 비치 되어있으면 현재와 같이 구·동간의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고 총소요량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인수증 만으로 모든 유류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임.</p>	
사 회 복 지 과	<p>▷ 제목 : 도림동 경로식당 운영상의 문제점</p> <p>- 도림동 경로식당 운영은 영등포 전지역의 결식노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운영실태를 보면 대상지역은 도림2동 거주 노인과 연령 대상도 일부60세 미만 노인도 추천되어 운영되고 있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경로식당 운영은 영등포 전지역의 결식노인과 65세이상 노인들을 골고루 추천받아 실질적인 경로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지 역 경 제 과	<p>▷ 제목 : 물가대책위원회 위원관리 및 회의개최 실태</p> <p>- 97.11.27일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부관리 실태를 보면 위원10명중 당연직위원7명, 위촉직위원 3명등 10명이 현직에 있는 위원으로 교체관리가 되어야 하나 당연직위원 인사이동 및 위촉직위원 변동으로 인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관리가 전위원으로 명부가 관리되고 있으며,</p> <p>물가대책위원회 회의도 96년도에 2회만 개최하였으며, 97년도에는 현재까지 개최한 사실이 한 번도 없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도 인사이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위원명부도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p> <p>물가대책위원회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물가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p>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98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7. 11. 26. (수) ~ 12. 2 (화) (7일간)

3. 감사실시대상및 사무

가. 대상기간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

- 도시정비국(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 건설국(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 각동사무소

나.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제9조에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자치구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전문위원	직 원
문종준	이일희	권혁필, 김명환, 박정호, 손병욱 안주영, 유남열, 조길형, 조용호 최재웅	유재한	사무국직원2 속기사1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장 소	감 사 대 상	비 고
11.26 (수)	제 3 감 사 장	주 택 과 도 시 정 비 과	필요시 현장확인
11.27 (목)	"	교 통 행 정 과 교 통 지 도 과	
11.28 (금)	"	건 축 과	
11.29 (토)	"	건 설 관 리 과 토 목 과	
11.30 (일)공 휴 일		
12. 1 (월)	"	치 수 과 공 원 녹 지 과	
12. 2 (화)	"	강 평	필요시 현장확인 및 현장확인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감사요령

대 상	감 사 방 법	주요감사 착안사항	비 고
도시정비국 건설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청취 ○ 질의및답변 ○ 서류 및 현지확인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등록(변경등록) 및 지도감독 • 전월세용자금지원관리 •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시영주택, 재개발아파트의 용자금 현황과 채납상황 • 근로자 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관내 무허가건설 및 위험건축물 상황(대책 및 조치사항) • 무허가 건물에 관한 진정서 접수 상황과 처리사항 •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와 철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 도시, 재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운영 관계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옥외 광고업 및 광고물의 지도 단속 •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관계 공무원 - 소관국장 및 관계 공무원

대 상	감 사 방 법	주요감사 착안사항	비 고
도시정비국 건설국	○ 현황보고청취 ○ 질의및답변 ○ 서류 및 현지확인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자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건축사무소관리 및 건축사보 지도감독 ●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현황 및 조치) ●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검사, 준공검사 ● 건축허가 취소 및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관한 사항 (현황 및 미준공 사유) ● 일반건축물의위험건물, 위험시설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도로사용허가상황과 점용료 부과·징수상황 ● 하천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부과·징수상황 ●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 당해년도 토지수용 사용 및 보상 ● 가로장애물 집중 단속지역과 그 제거방안 ●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 ● 건축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 당해년도 도로 및 토목공사설계 시공 및 감독 ● 당해년도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및 진행상황과 감독 	

대 상	감 사 방 법	주요감사 착안사항	비 고
도 시 정 비 국 건 설 국	○ 현황보고청취 ○ 질의및답변 ○ 서류 및 현지확인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골목정비 및 보도블럭포설과 유지관리 •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유지관리 • 하수도시설계획 및 집행유지관리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재심 청구 심의(건수, 조치) •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자 조치 •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 • 기타 '96.예산집행상황 • 가로수 삭제 및 유지관리 • '96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관계 공무원 - 소관국장 및 관계 공무원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가.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 1997년도 업무계획서
- 1997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 1997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
- 1997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1997년도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 접수처리부

나. 제출부수 : 15부

다. 감사요구자료

-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7.1월 이후의 것을 작성
- 위원회별로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 보고

라. 제출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8. 시정 및 조치사항 : 별첨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공원녹지과	<p>▷ 제목 : 시설녹지내 사유지의 문제점</p> <p>— 우리구 관내 시설녹지중 사유지 소유자 현황은 경부제3녹지 24필지 3,331㎡, 경부제4녹지 64필지 5,477㎡, 합계 88필지 8,808㎡는 1978년 8월 26일자로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결정고시된 지역임.</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위 88필지 8,808㎡ 시설녹지 지역내에 있는 사유지 소유주들은 20여년동안 개보수 또는 신축할 수도 없어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임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망.</p>	
녹지과	<p>▷ 제목 : 공무원 해외출장 선발기준의 문제점</p> <p>— 우리구 해외출장 공무원 현황을 95부터 97년 10월말경까지 3년간 검토하여 본 결과 271명인바, 이중 2명을 3회에 걸쳐 다녀왔음.</p>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녹지과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공무원 해외출장은 우수한 유공 공무원을 선발하여 선진 문물 경험과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 보다 나은 우리구 행정에 반영하고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 중 조유근, 조수만 과장은 3회에 걸쳐 다녀왔음.</p> <p>이는 선발에 공평을 기하였다고하나 우리구 1,600명의 직원 대다수는 공평한 선발로 보지 않고 직위와 정실에 의한 선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음</p> <p>앞으로 공무원 해외출장 선발시에는 객관적인 공평성을 기하여 선발조치 할 것을 시정 요망함.</p>	
교통지도과	<p>▷ 제목 : 노상주차장 위법</p> <p>- 당산동2가 교육보험사옥 뒷편 노상주차장에 주차선이 180°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90° 주차를 하고 45° 주차인데 90° 주차를 하고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도로경계석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임</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담당계장이 직접현황을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여주시고, 파손된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도록 조치바람</p>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건설관리과	<p>▷ 제목 : 도로불법 점유행위 단속</p> <p>- 우리구 관내 야간에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불법을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점포가 현재 여의도지역 30여개소, 영등포삼각지 지역에 30여개소, 당산역주변을 비롯하여 각 동마다 10여 개소가 산재하여 있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날로 늘어나는 현실임.</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우리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약260여개소가 있는데 이중 여의도에 있는 포장마차는 그 규모가 대형이고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유하고 있어 시민과 차량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오물 또는 폐기물과 방료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구청 책임부서와 각동 동장 책임하에 선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요망함.</p>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재 무 과	<p>▷ 제목 : 안양천 정비사업공사 사건</p> <p>안양천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96.4.12일 우리 영등포구청과 경도종합건설 조만석간에 일금 1,137,323,968원으로 체결한 공사계약건으로 발생한 우리 영등포구청의 불미한 사건에 대하여 41만 우리 영등포구민은 경악을 금치못한 큰사건이었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상기 사건은 우리 영등포구청과 경도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 입찰과정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당시 구청장을 대표한 재무과 계약계장 한상록과 경도종합건설 대표이사 조만석간에 이루어진 금품수수사건으로 민선 초대 구청장이 구속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불명예스러운 사건입니다.</p> <p>앞으로 우리구청에서 발주하여 계약하는 모든 계약방법에 종전과 같은 불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한상록계장과 같은 파렴치한 사람이 우리 1,600여명의 공무원중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 밝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요망</p>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사회진흥과	<p>▷ 제목</p> <p>○ 게이트볼장 운영 문제점 및 구예산 지원의 불공평성 영등포구 관내 22개동중 5개동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4개동에만 예산(각동 1,483,000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1개동은 지원되고 있지 않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미지원된 1개동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운영실적의 미비로 미지원되었다면 게이트볼장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p>	
교통지도과	<p>▷ 제목 : 각동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p> <p>- 각동 부설주차장 총 4,505건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규정을 위반한곳이 259건이 있으며, 그외에도 형식적인 시정만하고 부설주차장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구청 해당부서와 각 동사무소 해당동은 규정을 위반한 259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하여 위반사항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단속을 촉구함.</p>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 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 제목 : 도로무단점용 적발건에 대한 적시성 있는 증빙자료 관리철저</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길동 337-8 대지건설(최창호)의 3건(효명건설, 혜정건설, 소백설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후 우리 구청이 허가면적외 초과도로 점용에 대한 현장적발시 적발실태와 적발시 자료의 실태가 불일치하여 자료정리가 부정확한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시성 있는 증빙자료와 무단도로 점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됨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p>▷ 제목 : 공공도로상에 불법주차중인 건설중기의 처리대책</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우리구청 자료에 의하면 '97현재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과태료부과 232,064건, 견인지시 건수는 39,622건이다. 이중 건설중기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 건수도 상당수되리라 생각되나, 실제로는 도로상에 불법주차중인 건설중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이같은 중기를 견인하지 못하고 일반자동차 과태료(40,000원)만 부과하고 있고, 장기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건설중기에 대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반자동차 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반발의식이 있음은 물론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건설중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p>	
건설관리과	<p>▷ 제목 : 도로개설 공사구간의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요구</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신길동 329-32 — 신길동 253-21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업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주기 바람.</p>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공원녹지과	<p>▷ 제목 : 공사구간 가로수 관리철저</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현장의 가로수를 불가피하게 훼손했다 하더라도 식재시 가로수 1그루당 상당한 예산이 투입됨을 명심하여 가로수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건설관리과	<p>▷ 제목 : 한전주 및 통신주 동별 현황동 비치</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구청에서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내역의 근거가 되는 위치도가 동별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통보하는 근거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부과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동별 현황도를 비치할 것. 	
건설관리과	<p>▷ 제목 : 한전주 및 통신주 동별 현황동 비치</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구청에서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내역의 근거가 되는 위치도가 동별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통보하는 근거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부과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동별 현황도를 비치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총 무 과	<p>▷ 제목 : 행정기능 효율화를 위한 부서개편 축소 의 건</p> <p>○ 우리구 행정직제는 현재 1실 5국 3담당관 25개 과 90계와 22개동 44계와 1소 3과 9계로 편제 되었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우리구 직제기구를 검토하여 보건데 일예를 들 면, 재무국 소관 지적과는 도시정비국 소관하에 있어야만 업무기능이 원활하다고 보며, 인구 5,000여명의 행정동은 인근동과 통합함으 로써 인력과 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절 감되며 행정기능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 됨.</p>	
교 통 행 정 과	<p>▷ 제목 : 지역버스 운행 순환 재 건의</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우리구에서 '94.4.22부터 '97.7.29 기간을 통하여 12회에 걸쳐 지역 순환버스 운영을 건의하였으 나 '97.10.30시 관련위원회 심의결과 신설 제외 로 결정된 건을 재차 구민의 불편사항을 들어 반영조치 하기 바람.</p>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생활환경과	<p>▷ 제목 : 정화조 청소 수거방법 개선의 건</p> <p>○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뇨관련 정화조청소를 민간대행 기관인 서울산업주식회사와 덕성개발주식회사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수거방법에 있어 대행사가 구청장명으로 우편통보하여 수거일을 지정하고 우편통보를 받은 주민은 지정된 일시에 대행업소에 게 신고하여 수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민대다수가 불평불만을 하면서 정화조 청소 수거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임.</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편통보 수거방법을 지역별로 권역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수거를 하면 대행사의 우편통보서와 주민의 불편한 전화신고, 지정된 일시에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발송하는 독촉 통보서, 일정한 기간내에 청원 제출하는 청원심사문제, 기간내 정화조 청소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건당 20만원의 과징금문제도 간편하여지며, 대행업자는 작업능력을 백배 향상시키는 1거 3득의 방법이라고 사료됨. 시정요망.</p>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도시정비과	<p>▷ 제목</p> <p>○ 양평동1가 30 양남시장 주변차도와 보도에 적치물, 노점상 난립으로 주민의 불편이 많고 보도에 쌓아 놓은 적치물 때문에 통행인이 차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에 위험이 많음</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담당직원들이 순찰을 강화하여 차도와 보도에 쌓아 놓은 적치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으로 도로 점용을 하기위해서 철판, 돌, 나무 등을 사용하는 곳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할 것.</p>	
도시정비과	<p>▷ 제목 : 착오 부과된 도로점용료 시정지시</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 영등포동5가 42-1에 소재하는 백내과의원 대표 백종렬으로부터 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허가 신청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 해당 돌출간판이 사유지 안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바, 이는 부당하니 감액 처리하고 이러한 업무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p>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토 목 과	<p>▷ 제목 : 보도에 차량진입 금지봉 개선요망</p> <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현재 설치한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에 있어 높이를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어 예산절감과 어린이들의 놀이에 이용될 위험이 예상되므로 개선요망</p>	